

국회에서 의결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률 제12891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법률 제1289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생사건 및”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을 각각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생절차폐지”를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를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사위원”을 각각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를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생절차종결”을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각각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운용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을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회 관계인집회”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회 관계인집회의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에게도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제19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달”을 각각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220조 및 제2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223조제1항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을 “조사기간의 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채권자(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를 “채권자”로 한다.

제238조제1호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제2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285조를 삭제한다.

제286조제2항 중 “회생계획안제출명령이 있는 후”를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에 제9장(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편 제3장 제4절에 제4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0조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511조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생절차개시”를 각각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6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사위원”을 각각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647조 중 “회생절차종결”을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로 한다.

제649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88조”를 각각 “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개정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제50조, 제99조 등 및 제98조의2 신설).

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제238조).

다. 간이회생절차 신설(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1)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2)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제4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 **법률 제12893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대한”을 각각 “중대하고 명백한”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 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1항 중 “제5조제2항을”을 “제5조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